

201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

편집부

기획재정부가 201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'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'를 발간했다. 이 책자는 28개 행정기관의 변경되는 제도 및 법규 300여건을 정리하고 도표화했다.

서민 생활에 밀접한 내용으로는 일단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·등록세 면제가 있다.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(2%) 및 등록세(5%) 감면 폭이 50%에서 100%로 확대됐다.

이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(www.mosf.go.kr)에서 확인 가능하다.

■ 행정

- 주민등록표 등·초본 교부 방법 개선 = 8월 1일부터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등·초본을 교부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, 「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(일명 전자패



드)에 서명하여 등·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.

- 외국 국적 결혼이주자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 =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다문화 가정의 생활 불편 해소와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기대된다.
- 자동차 등록관청 확대 = 12월 1일부터 전국 어느 등록관청에서든지 자동차 등록이 가능해진다.
- 민원신청서식 개선 =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와 작성이 쉽도록 유사한 항목 재배열, 기재공간 확장, 민원인과 공무원 기재란을 음영표시로 구분된다. 국내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증가에 맞추어 외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등 5종의 민원서식은 5개 외국어로 병기한다.
- 공무원 유연근무제 도입 활성화 = 유연근무제는 시간제근무, 시차출퇴근제, 자율복장제, 재택근무제 등의 형태로 전 중앙부처 및 지방자

치단체에서 실시된다.

- 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입 = 앞으로 계약서를 못 받아도 계약 내용을 원사업자(대기업)에게 서면으로 확인 요청해 15일 안에 답이 없으면 당초 확인한 대로 계약이 인정된다.

■ 세무

-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·등록세 감면 확대 = 7월 4일부터 다자녀가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·등록세 전액 감면한다.
- 지방세 납부방식 개선 = 10월 1일부터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지며, 지자체 또는 납세자가 부담하던 신용카드수수료는 폐지된다.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은행 ATM에서도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. 자동이체의 경우에도 모든 은행에서 이체 가능하도록 확대했으며, 본인 이 희망할 경우에 잔고 부족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.
- 에너지세 인상 = 유류에 붙는 교통세와 교육세 등 각종 세금 인상에 따라 소비자 값도 오른다. 경유의 세금(교통·교육·주행세)이 ㄹ 당 53원 오름에 따라 소비자 값은 부가가치세 10%를 더해 ㄹ 당 약 58원이 오르게 된다. 액화석유가스의 소비자 가격은 ㄹ 당 72원, 등유는 29원, 중유는 3원 정도 오르게 된다. 다만 휘발유는 주행세가 인상되는 대신 교통세가 내려가 전체적으로 값에 변동이 없다.
- 부가가치세 면세율 조정 = 계란 흰자위와 계장,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.

■ 부동산

- 공동주택비용 공개 및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단 직접투표제 = 공동주택의 모든 비용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,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직접투표로 선출한다.
- 보증자리주택 입주, 5년 거주 의무화 = 입주 예정자는 90일 이내에 입주해 5년간은 거주해야 한다. 이를 어기면 계약해제 또는 환매조치한다.
- 미분양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·등록세 감면 연장 = 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·등록세를 경감한다.
- 특별공급제도, 8월부터 청약통장 의무화 = 8월부터 특별공급제도 청약통장이 의무화 된다. 따라서 3자녀 이상 특별공급분은 청약저축통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, 청약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되고 6회 이상 월납입금을 납입해야 한다.

■ 보건·복지

-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= 7월 1일부터 중증장애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생활수준이 열악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로 중증장애인 연금제가 도입돼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된다.
- 주거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및 선정기준 마련 = 6월부터 주거지원사업 대상자를 고시원·여인숙 거주자까지 확대하고 있다.
-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 =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필기와 실기시험에서 각각 60% 이상 득점해야 한다.

■ **소방**

-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점검결과서 보관 기간 단축 = 8월 5일부터 업주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고,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.
- 화재조사를 위한 출입·조사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= 8월 5일부터 단순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의무위반과 허위보고 또는 허위자료제출의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■ **농림**

- 원산지 표시제 확대 = 8월 5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는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, 배달용 치킨, 주류, 식용소금에도 적용된다.
-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확대 = 8월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의 적용대상이 현행 25개 품목에서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에 대해서도 시범 적용된다.

■ **기타**

- 동절기(12월~3월)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 = 전국 35개소의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고, 산행이나 산림욕을 위하여 찾아오는 이용객에 대해 입장료 폐지 기간 중에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
- 전문직 고소득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추가 = 7월 1일부터 30만원 이상 거래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확대된다. 현행 변호사, 의사, 회계사, 세무사, 학

원, 부동산중개업소, 음식점, 장례식장, 골프장에 노무사, 산후조리원, 유흥주점업가 추가된다. 룸살롱, 단란주점, 카바레, 스탠드바, 나이트클럽, 관광음식점, 요정 등 유흥주점업도 해당된다.

- TOEIC 정기시험 토요일 추가 시행 = 8월 첫 토요일 시험 실시 후 만족도가 높을 경우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.
- 2010 인구주택 총조사를 친환경 그린센서스로 실시 = 10월 인구주택 총조사 시에 인터넷조사 참여율을 30%로 확대하고, 우편조사를 새롭게 도입하며 조사표를 재생용지로 사용하고, 아파트의 5개 주택항목은 행정자료로 대체한다.
- 인터넷출력 탑승권 허용 =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할 경우 9월말부터 인터넷에서 출력한 탑승권으로도 출국 가능
-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= 전국 인구의 95%가 거주하는 144개 지자체(분리배출 대상 시·구)에서 2012년까지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
- 주민등록표 등·초본 교부수수료 면제대상자 확대 = 8월부터 특수임무 수행자도 국가보훈대상자와 같이 수수료 면제
-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보호장치 대폭 강화 = 9월 18일부터 상조업 등록제, 고객불입금 예치·보전제, 상조업체 정보공개제 도입, 소비자의 청약철회·계약해제시 대금환급을 의무화
- 국제 결혼중개업 이용자 보호 강화 = 당사자간 주요 신상정보 제공을 서면으로 제공토록 의무화, 결혼중개업자가 외국현지업체 등과 업무제휴를 할 때도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허위·과장 광고 금지의무 부여 